

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

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

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, 아래 수역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6. 6. 30.

울 산 해 양 경 비 안 전 서 장

◎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

순번	항 만 명	소재지	고 시 구 역
1	울산항(본항)	울 산 광역시	35-28-40N, 129-25-52E(슬도)와 35-24-11N, 129-25-52E와 35-24-11N, 129-21-13E(낙곶남방-우봉리)를 연결한 선내 의 해역
2	미포, 전하항	울 산 광역시	35-31-34N, 129-27-15E(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)와 35-30-41N, 129-26-43E(미포 북방파제 내측)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35-30-27N, 129-26-54E(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)과 35-30-07N, 129-26-34E(전하만 남쪽 TIP돌출부)를 연결한 선내 의 해역
3	대 변 항	부 산 광역시 기장군	35-13-13N, 129-14-10E(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)과 35-12-47N, 129-14-03E(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)과 35-12-48N, 129-13-22E(서암항 남방파제)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